







보도자료

• 미래창조 금융

• 따뜻한 금융

• 튼튼한 금융

배포	Ш	부터	부두	가능
411 —	/\I			710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, 법무부 상사법무과						
책 임 자	이형주 과장(02-2156-9870) 홍승욱 과장(02-2110-3167)	담 당 자	박재훈 사무관(02-2156-9871) 채희만 검사(02-2110-3630)				
배 포 일	2015.10.20(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2매			

제 목: 「전자증권법」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

1. 개 요

- □ '15.10.20.(火) 「전자증권법*」 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
 - *「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|
 - 동 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**발행과 유통을 원활히**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^{*}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
 - * 주식 및 사채 등을 실물 발행 없이 그 권리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여 권리관계가 설정·변경·소멸할 수 있도록 함
- **2. 주요 내용** (※ 상세한 내용은 '15.5.21일자 보도자료 참고)
- □ (적용대상) 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주식, 국채, 사채, 수익권 등을 대상으로 함
 -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**상장주식** 등은 **전자등록을 의무화**하고, 비상장 주식·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

	(운영체계)	전자등록기관 과	계좌관리기관으로	구성
--	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

- **전자등록기관은** 주식등의 **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** 거래내역을 **통합** 관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
- o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주식등을 위탁받은 **중권회사, 신탁회사** 등이 **담당**하며 **투자자별 고객계좌**를 관리
- □ (투자자 보호장치)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(초과등록)*가 발생할 경우, 거래안정성을 위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
 - * 전산상 착오에 의해,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경우 (예: 1개 증권 매매시 매도자 계좌에 -1, 매수자 계좌에 +1 처리를 해야하나 실수로 매도자 계좌의 -1 처리를 누락하는 경우)
 -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,
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,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
- □ (시행시기) 공포후 4년이내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

3. 향후계획

□ 동 법률 제정안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http://www.fsc.go.kr

